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987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12월 18일  
제 안 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동 조례안의 “사교육”, “사교육비”, “학생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, 교육감의 책무를 재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정의를 구체화함(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).
- 교육감의 책무를 종합하여 재규정함.(안 제3조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사교육” 이란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상황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, 기술, 예능 등을 유상으로 교습(敎習)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안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“학생의”를 “학생(보호자를 포함한다)이 제1호에 따른”으로, “말한다”를 “의미한다”로 하고,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, 교습소
- 나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제공하는 장소
- 다.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
- 라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지 않

는 교습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지정·고시하는 경우

3. “학생”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
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재학하는 학생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안 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 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 제1항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13조 제1항에 따른  
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.  
또한,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, 이를 적  
극적으로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사교육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, 학생 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식, 기술, 예능 등을 교습하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유상(有償)의 교육 서비스를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포함한다.</p> <p>가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, 교습소 등에서 학생의 학업 능력 보충, 진학 준비, 재능 계발 등을 목적으로 교습비를 받고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활동 행위</p> <p>나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, 지능정보기술 및 인공지능(AI)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원격 교습 및 콘텐츠 학습 행위(인터넷 강의, 학습용 애플리케이션 등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사교육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상황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, 기술, 예능 등을 유상으로 교습(敎習)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가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, 교습소</p> <p>나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제공하는 장소</p>

다. 방문 학습지, 전화·화상을 이용한 교습 등 학습 매체나 장소에 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각종 교습 행위

라. 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아닌 교육활동 행위

마. 그 밖에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이나 진로·진학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, 컨설팅 등의 유상 지도 행위 등

2. “사교육비”란 학생의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교재교구비, 수업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. 이 경우 세부 항목 등 구체적인 범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<신 설>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 제1항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

다.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

라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지정·고시하는 경우

<삭 제>

2. ----- 학생(보호자를 포함한  
다)이 제1호에 따른 -----  
----- 의미한다. <후단 삭제>

3. “학생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
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재학하는 학생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 제1항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교

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,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육 의존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. 또한,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,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, 사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교육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상황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, 기술, 예능 등을 유상으로 교습(敎習)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가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, 교습소

나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제공하는 장소

다.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

라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습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지정·고시하는 경우

2. “사교육비”란 학생(보호자를 포함한다)이 제1호에 따른 사교육을 위해

지출하는 교재교구비, 수업료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.

3. “학생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
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재학하는 학생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 제1항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. 또한,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,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.

제4조(사교육비 경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

2.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세부 추진 과제 및 추진방법

3. 사교육 실태분석

4. 학생 및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경감 대책

5.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

6. 그 밖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 및 설문조사 등)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학생, 학부모, 교원 등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며, 개인정보를 제외한 주요 결과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3년마다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내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다만,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
3.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활용 방안
4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전담부서의 설치·운영)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활성화 정

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